개요

뉴욕시 영어학습학생 위원회 (Citywide Council on English Language Learners: CCELL)는 투표권이 있는 11인의 위원과 투표권이 없는 학생 위원으로 구성된다. 투표권이 있는 11인 중 9인은 반드시 본 규정서에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 선출된 이중언어 또는 제 2외국어로써의 영어(ESL) 프로그램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로 구성되어야 하며 나머지 2인의 투표권이 있는 위원은 뉴욕시 공익 옹호관이 임명한다. 본 규정서는 자격 요건 및 CCELL의 위원 선출과 관련된 추천 및 선출 절차를 상세하고 있다. 또한 공석을 채우는 절차를 제공한다. CCELL는 뉴욕 공개회의 법에 따른 모든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I. 자격 요건

A. 학부모 및 공익 옹호관 지명인

1. 이중언어 또는 ESL [1] 프로그램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만이 CCELL에서 본인 추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후보 자격은 부모가 CCELL에서 후보 출마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신청서 제출 시점에는 자격을 갖추었지만, 임기 동안에 이중언어 또는 ESL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 자격을 충족시켜 주었던 자녀가 자격을 잃게 된다면, 이중언어 또는 ESL 프로그램에서 교육받고 있는 자녀의 부모로서의 자격이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더 이상 봉사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한다[2].

2.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

   a.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당의 선출 또는 임명 보직(전국, 주, 법원 또는 기타 정당 협의회의 의원 또는 대의원, 카운티 위원회 위원은 제외)을 맡고 있는 사람;

   b. 현재 교육청에 고용된 직원;

   c.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뉴욕시 위원회 또는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CEC)에서 해당 위원회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불미스런 행위로 제명당했거나 이런 위원회 또는 CEC 업무와 직접 연관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및

   d. 다른 뉴욕시 위원회 또는 기타 CEC에 소속된 사람

3.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도 봉사 자격이 없다:

   a. 교육 정책 패널 위원;

   b. 학부모회/학부모교사회(PA/PTA), 학교 리더십 팀, 학군 회장 위원회, 보로 고등학교 위원회, 타이틀 I 위원회 또는 커뮤니티 학교 이사회에서 해당 협회, 팀, 위원회, 협의회 또는 이사회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불미스런 행위로 제명당했거나 해당 협회, 팀, 위원회, 협의회, 또는 이사회와 직접 연관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및

   c. 교육청 윤리담당관 또는 교육감 규정 D-125에 따라 기타 교육감이 지정한 대리인에 의해 뉴욕시 이해관계 상충 법에 의거,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 받은 사람.

B. 학생

---

[1] 학부모란 부모 (출산 또는 입양, 의붓 부모 또는 양부모로서), 법률적인 보호자 또는 아이와 부모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으로 정의한다. 아동을 양육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대신에 정기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관리할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 법령에 요구된 바처럼, CCELL의 모든 학부모 위원들은 이중언어 또는 ESL 프로그램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이어야 한다.

이중언어 또는 ESL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참여한 적이 있는 고등학생으로, 봉사하는 학년도 동안에 12학년이 되는 고등학교 학생은 CCELL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규정서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약 30학점의 고등학교 학점을 이수한 학생을 12학년으로 간주한다.

II. 학부모 추천

A. CCELL에서 봉사하는데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은 다음의 온라인 주소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본인을 추천할 수 있다:www.nycparentleaders.org. 후보자는 한 개 이상의 커뮤니티 및/또는 뉴욕시 교육 위원회에 지원할 수도 있다. 복수 지원은 허용되나 한 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봉사할 수는 없다. 신청 접수시 복수의 위원회에서 봉사하고자 지원하는 후보자는 반드시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명시해야 한다. 한 개 이상의 위원회에 조건부 선출된 후보자는 조건부 선출된 위원회 중 가장 높은 순위로 명시한 위원회에 배치된다. 가정 및 커뮤티니 참여 지원부(Division of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FACE)는 신청서 제출 일정을 다음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임: www.nycparentleaders.org.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학부모들은 FACE에 연락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줄 학교 및 로컬 기관들의 목록에 대해 문의한다.

B. 후보자는 이중언어 또는 ESL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있는 각 공립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 자녀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이중언어 또는 ESL 프로그램에 등록된 자녀가 교육받고 있는 각 학군을 대표할 것이 고려된다. 후보자가 대표할 각 학군에 관련된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교육감 재량에 따라 자격박탈의 사유가 된다.

C. 학부모 및 대중이 검토할 수 있도록 각 후보의 신청서 일부 (성명,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 자기 소개와 봉사 내역 및 개인 성명)가 다음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임: www.nycparentleaders.org.

III. 선출자(SELECTOR)

각 커뮤니티 학교 학군 및 보로와 제 75학군의 회장 위원회는 위원들 중 ELL 학생의 학부모 1인을 각 각 선출하여 CCELL 위원들의 선출자로 봉사하도록 한다, 회장 위원회에 ELL 학생의 학부모가 없는 경우, 회장 위원회는 학군 또는 보로에서 ELL 학생의 학부모 중 선출자로 봉사할 사람을 모집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처한 회장 위원회는 자원한 학부모들 중 1인을 선발해 CCELL 선출자로 봉사하도록 한다. CCELL의 후보인 학부모는 선출자로 봉사할 자격이 없다.

IV. 후보자 포럼 절차

A. FACE에서 CCELL에서 봉사할 후보자들이 선출자 및 기타 학부모와 관심을 갖고 있는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할 것이 허용되는 후보자 포럼을 주관한다.

B. 후보자 포럼은 반드시 후보자 신청서 제출 마감일이 지난 후 그러나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5월 두번째 화요일 지명된 선출자가 투표하기 전에 진행되어야 한다. FACE는 후보자 포럼이 진행될 교육청 장소, 날짜 및 적절한 시간을 결정하고 후보자 포럼 진행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취득한다. FACE에서 후보자 포럼과 관련된 모든 필수 허가서 취득 및 기타 관련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C. FACE는 후보자 포럼에서 배포될 CCELL 경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의 성명과 개별 주장을 포함한 CCELL- 특화 후보자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한다. FACE는 필요하다면 후보자 포럼을 위한 추가적인 업무 지원을 한다.

V. 선출 절차

A. 학부모 위원 선출 (투표)

1. 선출자는 투표를 위해 반드시 www.nycparentleaders.org에 로그인 한다. 로그인 한 후, 선출자는 CCELL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의 성명을 포함한 투표권을 제공받게 된다. 각 선출자는 두 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FACE는 투표권 제출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선출자에게 제공한다.

2. 투표 결과를 기록할 때:

a.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9인의 후보가 자격의 확인 여부에 따른, 조건부로 선출된다. 그러나 섹션 V.A.2.b에 제공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떤 학군에서도 1인 이상의 대표를 갖지 않도록 한다. 만약 동일한 학군에서 한 명 이상의 후보가 선출되었다면, 더 많은 투표를 받은 후보가 선출된것으로 간주한다. 더 적은 투표를 받은 해당 학군의 다른 후보자는 고려에서 제외되며 아직 CCELL에 대표를 보유하지 못한 학군의 다음으로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사람이 조건부로 선출된것으로 간주된다.

b. 섹션 V.A.2.a에 설명된 제한 규정은 해당 제한 규정을 적용했을 때 아홉 명 이하의 학부모가 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후보자 양자 또는 그 이상이 동일한 투표를 얻거나 또는 처음에 아홉 명 이하의 후보자가 선출된 경우,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이런 경우, 각 선출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한다.

a. CCELL 위원석의 한 석 또는 그 이상의 동일한 투표로 인해 재선거가 필요할 때, 동일한 투표수를 얻었던 후보자들 만이 결선 투표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

b. 섹션 V.A.2.a에 정해진 바와 같은 학군에서 복수의 후보가 선출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어 1개 이상의 의석이 충원되지 않아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 이미 선출되지 않고 CCELL에서 봉사하는 대표가 없는 학군의 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모든 후보자가 결선 투표에 입후보할 자격을 가진다. 결선 투표의 실패가 모든 의석을 채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섹션 V.A.2.b에 정해진 예외가 적용된다.

c. 섹션 V.A.3.a 및 V.A.3.b에 정해진 바 외의 이유로 한 석 또는 그 이상의 의석이 공석으로 남아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 아직 선출되지 않은 모든 후보자는 결선 투표에서 선출될 자격이 있다.

d. 상기 섹션 V.A.3.a, V.A.3.b 및 V.A.3.c를 준수하기 위해 여러번의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 여러번의 결선 투표는 동일한 시간에 섹션 V.A.3.a, V.A.3.b 및 V.A.3.c 요건을 준수하는 후보자 그룹 별로 각기 다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e. 만약 결선 투표 절차를 통해서도 모든 의석을 채우지 못한다면, 교육청을 위해 선출 절차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상기 섹션 V.A.3.a, V.A.3.b 및 V.A.3.c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격 사항에 대한 동일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추첨을 통해 위원을 결정한다. 그러나 최초 선출 절차와 결선 투표에서 표를 전혀 얻지 못한 후보자의 경우 본 규정서의 섹션 IX.A.2 및 IX.A.3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의석을 채울 수 있도록 위원회의 공석이 발생하도록 남겨둔다.

4. 후보자가 선출 절차가 완전히 끝난 후 그러나 선거가 실시된 해의 6월 25일 및 이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잃게 된다면, CCELL에 이미 대표를 선출한 학군이 아니며 학군의 최초 선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다음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조건부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3] 만약 이런 방법으로 후보자를 선출할 경우 동점이 되는 경우, 교육청을 위해 선출 절차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추첨을 통해 위원을 결정한다. 만약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보가 없는 경우, 본 규정서의 섹션 IX.A.2 및 IX.A.3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의석을 채울 수 있도록 CCELL에 공석이 발생하도록 남겨둔다.

5. 학부모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다.

B. 뉴욕시 공익 옹호관 지명

뉴욕시 공익 옹호관은 투표권을 가진 2인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 두 위원들은 반드시

[3]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6월 25일 이후에 실격 사유가 발생한 다면, 본 규정서의 공석 처리 절차 섹션 IX.A.2 및 IX.A.3가 적용된다.

폭 넓은 영어학습학생의 교육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뉴욕시 학교들의 이중언어 및 ESL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다. 공익 옹호관의 지명을 원하는 CCELL 후보자는 공익 옹호관의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얻어 공익 옹호관의 사무실에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C. 학생 위원 지명 (투표권 없음)

장애학생 및 영어학습학생 담당 수석 성취 담당관은 이중언어 또는 ESL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적이 있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 1명을 선택하여 수석 성취 담당관이 개발한 절차를 활용하여 CCELL에서 봉사하도록 한다.

VI. 조건/자격의 검토

학부모 후보자의 조건부 선출 이후 그러나 이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감 또는 교육감 지명인은 후보자가 CCELL에서 봉사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만약 교유감이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였다면, 교육감의 결정 내용이 공적인 조사를 위해 제공될 수 있도록 FACE의 보로 및 중앙 사무실에서 발표 후 7일 내 서면으로 제공할 것이다. 해당 결정에는 이런 발표에 대한 사실 및 법률적인 기반이 포함될 수 있다. 교육감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 모든 후보자는 CCELL에 이미 대표를 선출한 학군이 아닌 학군의 후보자인 경우 다음으로 가장 높은 표를 얻은 후보자로 대체될 것이다.

VII. 일정

최초 CCELL과 관련 해당 위원들은 2011년 5월 두 번째 주 화요일 선출되며 이 후 매 2년 후에 6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가 실시된다. 선출 절차는 90일 동안에 진행된다. 여기에는 절차의 대중 공개가 허용되는 시간, 학부모 후보, 후보 포럼 및 선출자의 투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FACE는 이 규정서를 준수하기 위한 정확한 일정을 게시할 것이다.

VIII. 사직

A. 학부모 위원

학부모 위원의 사직은 반드시 교육감에서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교육감은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 지원실의 수석 가정 참여 담당관이 교육감 대리로 사직서를 접수하도록 지명한다. 이런 사직서는 수석 가정 참여 담당관에게 전달 또는 보관하게 된 날 이후 30일 이내의 향후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전달 또는 보관하게 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교육감이 동의하지 않는한 사직은 철회, 취소 또는 수정될 수 없다.

B. 공익 옹호관 지명인

공익 옹호관이 지명한 위원의 사직은 반드시 공익 옹호관 앞으로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런 사직서는 공익 옹호관에게 전달 또는 보관하게 된 날 이후 30일 이내의 향후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전달 또는 보관하게 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공익 옹호관이 동의하지 않는한 사직은 철회, 취소 또는 수정될 수 없다.

C. 학생 위원

학생 위원의 사직은 반드시 서면으로 장애학생 및 영어학습학생 담당 수석 성취 담당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이런 사직서는 수석 성취 담당관에게 전달 또는 보관하게 된 날 이후 30일 이내의 향후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전달 또는 보관하게 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수석 성취 담당관이 동의하지 않는한 사직은 철회, 취소 또는 수정될 수 없다.

IX. 공석

A. 학부모 및 공익 옹호관 지명 위원의 공석

1. 만약 CCELL 위원이 본인의 임기 동안 서면으로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통보하고 CCELL의 회의에 3회 이상 참석을 거부하거나 불참할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직책에서 제명 된다.[4] 각각의 불참과 서면으로 제공한 이유는 회의의

[4]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유있는 불참으로 유효하다: 친척의 사망 또는 친척의 장례식 참석, CCELL 위원 또는 가족의

공식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공익 옹호실에서 지명한 위원의 모든 불참은 CCELL의 업무 총괄(Administrative Assistant) 또는 회장이 공익 옹호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적절한 사유가 없이 3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CCELL은 정기 회의에 해결 방안으로 공석이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교육감(적용되는 경우 공익 옹호실)에게 이런 상황을 통보한다.

2. 임기가 남아 있는 CCELL의 위원석에 공석이 발생하면, CCELL는 공개 회의에서 공석을 채운다. CCELL은 공석을 채우기 전에 이중언어 또는 ESL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의 학부모와 논의한다. CCELL의 학부모 위원 공석을 채우는데 관심있는 모든 개인은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CCELL 또는 FACE에서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3. 만약 후보간에 동일한 표를 획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60일 내에 CCELL에서 공석을 채우지 못한다면 교육감의 투표로 위원을 결정한다. CCELL에서 기타 이유로 60일 이내에 공석을 채우지 못한다면 교육감이 공석을 채울 수도 있다.

4. 공익 옹호실에서 지명한 위원 직책에 공석이 발생하면 공익 옹호실에서 남은 임기 동안 봉사를 할 위원을 지명한다. 공익 옹호관의 지명 위원의 공석을 채우길 원하는 후보자는 공익 옹호관의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얻어 공익 옹호관의 사무실에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B. 학생 위원 공석

학생 위원의 공석 발생의 경우에는 장애학생과 영어학습학생 담당 수석 성취도 담당관이 수석 성취도 담당관이 개발한 절차를 활용하여 다른 졸업반 학생이 남은 임기를 마치도록 지명한다. 수석 성취도 담당관은 CCELL 및 FACE에 본인의 지명 사실을 알린다.

X. 불만제기 절차

본 규정의 준수에 관한 이의제기는 반드시 위반 사항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지 5일 내에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의제기를 하게 된 특정 상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XI. 기술적 지원

FACE에서 본 규정서에 포함된 절차의 실행에 관해 총괄하며 필요하다면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본 규정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십시오:

전화: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 지원부	팩스:
212-374-2323	N.Y.C. Department of Education 49 Chambers Street - Room 503 New York, NY 10007	212-374-0076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 배심원 소환을 포함한 의무적인 법원 출석, 군인의 의무, CCELL 회의 불참을 피할 수 없는 직업과 관련된 문제 발생 및 기타 CCELL에서 적절한 이유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